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

[시행 2024. 1. 1.] [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588호, 2023. 11. 7., 일부개정]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(복지정책과), 051-605-4313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를 지원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데 대하여 그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5.7.1., 2021.11.3., 2023.11.7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참전유공자"란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| (이하 "참전유공자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2. "무공수훈자"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국가유공자법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23.11.7.]

제3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참전유공자, 무공수훈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(이하 "유공자"라 한다)으로 한다.<개정 2015.7.1., 2021.11.3., 2022.11.8., 2023.7.4., 2023.11.7.>

- 1. 삭제 <2022.11.8.>
- 2. 삭제 <2022.11.8.>

제4조(지원사업)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.<개정 2015.7.1., 2021.11.3., 2023.11.7.>

- 1. 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(이하 "수당"이라 한다) 월 5만원 지급 <개정 2022.11.8., 2023.11.7.>
- 2.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- 3.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

제5조(지급방법 및 시기)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7.1., 2023.11.7.>

- ②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대상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며, 제3조에 따른 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지급 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(사망, 전출 등)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 <개정 2022.11.8.>
-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. <개정 2015.7.1., 2023.11.7.>
- 제6조(지급결정) 구청장은 매년 1/4분기 중 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,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7조(신청사항 변경)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7.1., 2023.11.7.>
- 1. 주소가 변경된 경우
- 2.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부 정리 후 신청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급대상자 관리) 구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7.1., 2023.11.7.>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<2009. 8. 7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1098호, 2016.2.12.> (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,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<2022.11.8.>
 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<제1553호, 2023.7.4.> (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)
 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 <2023.11.7.>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